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」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 마목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
 - 거주에 관한 증명은 1955. 4. 18부터 1962. 6. 24까지의 동적부에 의한 주거기록과 1962. 6. 25부터 1968. 10. 19까지 구주민등록표에 의한 주거기록을 공부대조 후 증명발급해 주는 것으로
 - 서울시에서는 1981. 6. 19 거주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지 말고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의 거주사실 증명은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을 시달한 바 있고, 2004. 6. 4에는 조례 및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10개구에서는 삭제조치 하였습니다.
 - 거주에 관한 증명사항의 삭제안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였으나 본 조례안대로 삭제시 분쟁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□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 신설은

-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1999. 1. 18 개정되어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종전 시·도지사에서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하도록 변경되고, 2000. 3. 28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수수료를 시·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, 2002. 5. 7 서울시로부터 신고 체육 시설업 수수료 징수조례 정비통보가 있었습니다.
- 제안된 수수료 20,000원은 대부분 5,000원인 타 자치구에 비하면 현격히 높으나, 원가를 수수료에 반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며, 유사수수료인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0,000원,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30,000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만, 동 수수료에 대한 우리구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의 원가는 22,878원으로, 이는 산출시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75분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나 관내 출장시 평균적으로 왕복 40분정도 소요되고 20분정도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문서작성 접수시간 등 20분을 감안하면 총 8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 추정 소요시간 80분을 적용할 경우 수수료의 원가는 10,294원임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.

2005. 9. 5

보고자 : 김 찬 재

【 관련 법령 】

〈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, 제22조, 제41조〉

제10조 (체육시설업의 구분·종류)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<개정 1999. 1. 18, 1999. 3. 31〉

1. 등록체육시설업 : 골프장업·스키장업·요트장업·조정장업·카누장업·빙상장업·자전거경주장업·승마장업·종합체육시설업
2. 신고체육시설업 : 수영장업·체육도장업·볼링장업·테니스장업·골프연습장업·체력단련장업·에어로빅장업·당구장업·썰매장업·무도학원업·무도장업

제22조 (체육시설업의 신고)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1999. 1. 18〉

제41조 (수수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 1. 18〉

1.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
2.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
3.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

〈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〉

제38조 (수수료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<개정 1996. 5. 30, 2000. 3. 28〉

자치구별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현황

자치구명	종류	수수료	승인일자	전화번호
중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2.11. 4	2260-1098
	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		
용 산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2. 7.11	710-3324
	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		
마 포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5. 6.15	330-2506
	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		
강 북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3. 4. 4	901-2103
	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		
도 봉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3.11. 5	2289-1457
	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		
노 원 구	체육시설업등록 사업계획 승인신청	50,000	2000.11.6	950-3101
	체육시설업등록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	20,000		
	체육시설업등록신청	30,000		
	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	10,000		
	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 5,000		
강 서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2. 9.17	2600-6412
동 작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3.12.31	820-1321
	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		
서 초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2.10. 7	570-6321
	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		
송 파 구	체육시설업등록 사업계획 승인신청	50,000	2003. 7.14	410-3410
	체육시설업등록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	20,000		
	체육시설업등록신청	30,000		
	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	10,000		
	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	10,000 5,000		
강 동 구	체육시설업신고	5,000	2002. 1.12	480-1411
	체육시설업 변경신고	5,000		

※ 기타 자치구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5,000원을 징수하고 있음.